제141회 거창군의회 <임 시 회>

조례·규칙안 상정 (총 14건)

거 창 군

--- 목 차 ---

의 안 번 호	건 명	페이지
2007 ~ 40	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
2007 ~ 41	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	12
2007 ~ 42	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5
2007 ~ 43	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1
2007 ~ 44	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5
2007 ~ 45	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4
2007 ~ 46	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9
2007 ~ 47	거창군의회시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45
2007 ~ 48	거창군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50
2007 ~ 49	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58
2007 ~ 50	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68
2007 ~ 51	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74
2007 ~ 52	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78
2007 ~ 53	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	85

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7	~	40
----------	------	---	----

제출연월일	2007. 11. 15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(2006.12.30) 및 공유재산 관리기준(행정자치부, 2007. 3. 9)에 따라 우리 군의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일치시키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토지의 지하·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 삭제(안 제29조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음
- 나. 제32조 중 "영 제35조"를 "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35조" 로 변경(안 제32조)
 -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과 혼돈을 방지하기 위함
- 다. 제39조제1항 중 "영 제27조제8항"을 "영 제42조"로 변경(안 제39조)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관련 조문 변경
- 라.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및 매각기준 명시 (안 제40조)
 -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사유건물에 대하여는「건축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제한
 -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
 - 매각시 잔여지가「건축법」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 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 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음.
 - 군의 읍·면지역에서는 1,000제곱미터 이하
- 마. 분수림을 규정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47조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삭제(안 제44조)
- 바.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 3배 증액(안 제64조)
 - 총보상금 : 1,000만원 → 3,000만원
 - 필지별 보상금 : 100만원 ~ 200만원 → 300만원 ~ 600만원으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31조제6항, 제47조, 제84조 「공유재산관리기준」(행정자치부)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다. 그 밖에

(1)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(2)입법예고(2007. 9.10. ~ 9.30.)결과 : 의견 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"를 "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거창군(이하"군"이라 한다)"를 "군"으로 한다.

제2조 중 "거창군수(이하"군수"라 한다)"를 "군수"로 한다.

제29조를 삭제한다.

제31조제4항 중 "30%"를 "30퍼센트"로 한다.

제32조 중 "영 제35조"를 "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5조"로 한다.

제39조 본문 중 "영 제27조제8항"을 "영 제42조"로 한다.

제40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제4호 중 "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"를 "군의 소유가 아닌 「건축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"로, "(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)"을 "(다만,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)"로, "있다."를 "있으며, 매각시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

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."로 하고, 같은 조제5호 중 "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"를 "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,000제곱미터 이하의"로, "50%"를 "50퍼센트"로 한다.

제44조를 삭제한다.

제64조제1항 중 "1,000만원"을 "3,00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제1호 중 "200만원"을 "60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항제2호 중 "100만원"을 "300만원"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u>신·구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
제명 :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	제명 :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거창군(이하"군"이라 한다)</u> 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관리책임) ① <u>거창군수(이하"군</u> 수"라 한다)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② ~ ③ (생 략)	
제29조(토지의 지하,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)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.	

<u>신 ·구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① ~ ③ (생 략)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%를 적용한다.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(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) ×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÷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(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) ⑤ (생 략)	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제13조제8항 및 영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(이하 이 조에서 "대부료등"이라한다)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	 「 <u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</u> <u>제35조</u>

<u>신 ·구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조성원가 매각) <u>영</u> 제27조제8 <u>항</u>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 을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으며,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(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)와 투	
자개발비(건축불이 있는 경우에는 건 축비를 포함한다)로 한다. 1. ~ 4. (생 략)	 1. ~ 4. (현행과 같음)
경우)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 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「건축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 물(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	 1. <삭 제>
조치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)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1,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)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. ~ 3. (생 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

<u>신 ·구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
4.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,000제곱 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(「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)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(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)를 동 건물의소유자에게 매각할 때. 다만, 다수의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,000제곱미터 또는 2,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수있다.	4
5.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<u>군이 소유한 지분</u> 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. 다만,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<u>50%</u> 이상 이어야 한다.	5.

<u>신ㆍ구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분수림의 설정) 영 제47조의 규 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 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할 수 있다. 제64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	
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, 총 보상금은 1,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1.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. 가. ~ 나. (생 략)	<u>3,000만원</u> 1 <u>600만원</u>
2.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. ② ~ ④ (생 략)	

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007~	41
----------------	----

제를	출연원	일일	2007. 11. 15	5.
제	출	자	거 창 군 수	

1. 개정이유

- 「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」을 적용해 온 농공단지 업무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근거법규를 개정하고,
-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외시키며,
- 특히,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함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변경: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
- 나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다.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(안 제3조. 제4조)
- 라.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과 책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. 제7조)
- 바. 금고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사.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(안 부칙)
 -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「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」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회계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
 - ○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, 제28조, 제29조, 제46조
 - ○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2조
 - ○「산업단지 관리지침」제8조
 - ○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제13조, 제23조
 - ○「지방재정법」제9조, 제94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- 다. 그 밖에
 - (1)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 - (2)입법예고(2007.10.9 ~ 10.29)결과 : 의견 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"이란 거창군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, 편입용지의 매입, 기반조성, 진입도로 개설, 전기·통신시설, 토목, 용수공급시설, 상·하수도시설,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.
- ② "농공단지조성사업"이란 거창군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, 편입용지의 매입, 기반조성, 진입도로 개설, 전기·통신시설, 토목, 용수공급시설, 상·하수도시설,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.

제3조(세입) 거창군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(이하"회계"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.

- 1. 조성부지 분양 수입금
- 2. 사업 선수금
- 3. 기채자금
- 4. 보조금
- 5. 일반회계의 전입금
- 6. 그 밖의 수입

제4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와 사후관리에 소요되

- 는 예산의 지출 및 그 밖의 부대경비
- 2. 지방채의 상환 원금과 이자
- 3. 일반회계 전출금
- 제5조(지방채 발행) 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.
- 제6조(회계관계공무원 지정) 이 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과 장을 징수관 및 경리관으로 산업단지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출 납원으로 지정한다.
- 제7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를 준용한다.
- 제8조(금고의 설치)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.
- 제9조(준용규정)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 - ② 사업자가 조성부지 분양대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.
-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「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회계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	2007. 11. 15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지방세법」의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이 인하되었으므로 상수도사용요금 체납액의 가산금율을 인하하여 형평성을 맞추고,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칭을 띄어쓰기함(안 제명): 「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」
- 나. 상수도사용요금 체납시 가산금율 인하함(안 제34조)
 - 100분의 5 ⇒ 100분의 3
- 다. 부적합한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 (안 제1조·제14조제3항·제19조·제25조제3항·제30조 본문·제34조·42조제1항)
 - 의하여 ⇒ 따라
 -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
 - 날로부터 ⇒ 날부터
 - 기타 \Rightarrow 그 밖에 (안 제1조·제6조제5항제3호·제19조제9호·제30조 제3호·제39조제4항제2호·제42조제1항제12호·제45조·제47조제2항)
 - 법령명에 낫표(「」)사용 (안 제1조·제39조제1항·제4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
 - 「지방세법」 제27조(가산금 및 독촉)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- 다. 그 밖에
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 - 입법예고(2007. 9. 6. ~ 9. 27.) : 의견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"를 "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(이하"군"이라 한다)"를 "「수도법」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군"으로 하고,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3조 중 "거창군"을 "군"으로, "거창군수(이하"군수"라 한다)"를 "군수"로 한다.

제6조제5항제3호·제19조제9호·제30조제3호·제39조제4항제2호·제42조제1항 제12호·제45조·제47조제2항 중 "기타"를 "그 밖에"로 한다.

제14조제3항·제19조·제25조제3항·제30조 본문·제42조제1항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34조 중 "날로부터"를 "날부터"로 하고, "100분의 5"를 "100분의 3"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 중 "수도법시행령"을 "「수도법 시행령」"으로 한다.

제46조 중 "수도법"을 "「수도법」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: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	제명 :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(이하"군"이라 한다)</u> 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 비용의 부담 구분 및 <u>기타</u>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<u>의 규정에 따라 군</u> <u>그 밖에</u>
제3조(급수구역) 급수구역은 <u>거창군</u> 의 관할구역 중 <u>거창군수(이하"군수"라</u> <u>한다)</u> 가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.	<u></u>
제6조(급수공사의 승인) ① ~ ④ (생 략) ⑤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할 수 있다. 1. ~ 2. (생 략) 3. <u>기타</u> 군수가 분리 승인함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	 1. ~ 2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시설분담금) ① ~ ② (생 략) ③ 다음 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	

1. ~ 3.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신고) 상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 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 1. ~ 8. (생 략) 9. <u>기타</u>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	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1. ~ 8.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급수중지와 폐전) ① ~ ② (생 략) ③군수는 다음 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할 경 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 다. 1. ~ 5. (생 략)	
제30조(사용수량의 인정) 사용 수량은 상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. 다 만, 다음 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. 1. ~ 2. (생 략) 3. <u>기타</u> 인정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	
제34조(가산금) 상수도사용자등이 상수 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<u>날로부터</u>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.	 <u>날부터</u>

신 •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중수도 설치대상 및 확인) ① 수 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" 이라 함은 물을 1일 1,0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시설중 병원, 수영장, 관광휴양시설을 말한다. ② ~ ③ (생 략) ④ (생 략) 1. (생 략) 2. 송·배수시설은 수도, 전기, <u>기타</u> 배관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. 3. ~ 4. (생 략) ⑤ (생 략)	
제42조(급수정지 처분) ①군수는 다음 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 수를 정지할 수 있다. 1. ~ 11. (생 략) 12. <u>기타</u>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 하거나 불복한 자 ② (생 략)	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
제45조(과태료) 사기, <u>기타</u> 부정한 수 단으로 사용료, 수수료, 분담금의 징 수를 면탈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 탈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에 과한다.	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) 수도법 제 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.	
제47조(급수장치의 철거) ① (생 략)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<u>기</u> 탄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. ③ (생 략)	<u>밖에</u>

의 안 번 호	제 43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 결사 항

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제 43 호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 - o「지방자치법」제54조 → 제62조(안 제1조)
- 나.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
 - 1) oo의 규정에 의하여 → oo에 따라(안 제1조·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제5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62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"잔임기간으로"를 "남은 임기로"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항에 따라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한다)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제62조에 따라</u>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~ ② (생략)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</u> 임기간으로 한다.	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남은</u> <u>임기로</u>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 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 ③ ~ ⑥ (생략)	제7조(특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라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62조 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의 안 번 호	제 44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 결 사 항

거창군의회 행정시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제 44 호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되고, 같은 법 시행령(2007. 10. 4)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 - 1)「지방자치법」제36조 → 제41조 (안 제1조)「동법시행령」제19조의2 → 제52조 (안 제1조)
 - 2)「지방자치법」제95조제2항 → 제104조제2항, 제104조 내지 제107조 →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, 제108조 및 제111조 → 제117조 및 제120조 (안 제5조)
 - 3) 「지방자치법」제36제3항 → 제41조제3항(안 제6조)
 - 4) 「지방자치법」제36제4항 → 제41조제4항(안 제9조, 제9조의3) 제36제5항 → 제41조제5항(안 제9조)

- 5) 「지방자치법」제37제2항 → 제42조제2항(안 제9조의2)
- 나.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
 - 1) oo의 규정에 의하여 → oo에 따라(안 제1조·제7조)
 - 2) oo의 규정에 의한 → oo에 따른(안 제1조·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제41조, 제42조, 제104조, 제113조부터 제117조, 제120조
- 2)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제52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 중 "제36조"를 "제41조"로, "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" 를 "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"로 한다.
- 제5조제1항제2호 중 "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"을 "법 제113 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"으로, "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"을 "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
- 제6조제2항 중 "법 제36조제3항"을 "법 제41조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 항 중 "형사소송법"을 "「형사소송법」"으로 한다.
- 제9조제1항 중 "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"을 "법 제41조제4항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"을 "법 제41조제5항에 따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형사소송법"을 "「형사소송법」"으로 한다.
- 제9조의2 중 "법 제3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"을 "법 제42조

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"으로 한다.

제9조의3제3항 중 "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 "법 제41조제4항에 따라"로 한다.

제16조 중 "제12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2조에 따른"으로, "제13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3조에 따른"으로, "거창군의회회의규칙"을 "거창군의회회의 규칙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 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"감사"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"조사"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. (생략) 4.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또는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	제5조(감사 또는 조시의 대상기관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법 제 117조와 제120조에 따른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 (생략) ②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 ③ ~ ④ (생 략) ⑤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법 제36조제	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법 제41조
<u>4항의 규정에 의한</u>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	제4항에 따른
류의 제출이나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	
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, 증언 및 의견진	
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, 서류 제	
출일,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	
이를 행하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	③법 제41조제5항에 따른
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하	
되,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"별표"와 같으며,	
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거창군재무회	
계규칙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본회의 또는 위	
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.	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	⑤ <u>「형사소송법」</u>
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
제9조의2(대리 출석 답변 등) 군수는 <u>법 제37</u>	
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	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
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	
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	
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	
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제9조의3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
제9조의3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	제9소의 (등인의 모호 및 설미모경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① ~ ② (생략) ② 버 게26조게4하이 그것에 이뤄서 서로	
③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,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	
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	
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	
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.	
제16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	제16조(징계)
<u>제12조의 규정에 의한</u> 제척사유가 있음을	제12조에 따른
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, <u>제13조의</u>	제13조에 따른
<u>규정에 의한</u>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	
및 <u>거창군의회 회의 규칙</u> 에 정하는 바에 따	거창군의회 회의 규칙
라 징계할 수 있다.	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41조 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.
-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 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

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하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 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3조 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 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14조 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5조 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6조 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7조 (하부행정기관의 장)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을 둔다.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.

제120조 (하부행정기구)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수 있다.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52조 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의 안 번 호	제 45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 결 사 항

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제 45 호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제 출 자 : 총무위워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 "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" 를 "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" 로 띄어쓰기 함.
- 나.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 - 1) 「지방자치법」제37조 → 제42조(안 제1조)
 - 2)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 내지 제107조 → 제113조부터 제116조(안 제2조제3항)
 - 3) 「지방자치법」제108조 → 제117조(안 제2조제5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42조,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"를 "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지방자치법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42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"법 제10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"을 "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"을 "법 제117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<u>거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</u> <u>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</u>	제명 <u>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</u>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거창군의회(이하"의회"라 한다) 또는 위 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 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「지방자치법」(이하"</u> 법"이라 한다) 제42조에 따라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범위)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략) 3. <u>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</u> <u>한</u> 소속 행정기관장	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</u> <u>에 따른</u>
4. (생략)5. <u>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</u> 하부행정기 관의 장	4. (현행과 같음) 5. 법 제117조에 따른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42조 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13조 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 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 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 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14조 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5조 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6조 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7조 (하부행정기관의 장)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을 둔다.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.

의 안 번 호	제 46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 결 사 항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제 46 호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제 출 자 : 총무위워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되고,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 (2007. 10. 4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, 아울러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 - 1) 「지방자치법」제32조 → 제33조(안 제1조)
 - 2) 「동법시행령」제15조 → 제33조(안 제1조)
- 나. 의정활동비・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함(안 제6조)
 - 1) 월정수당 월 1,416,000원 → 2,130,180원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33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33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월 1,416,000원"을 "월 2,130,180원"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국외여비지급 기준표(제7조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	철 도	선 박	항공	자동차					,	금
구 분	o ol	٥ م)	٥ م)	o 61	일 비	숙박비	식 비	15일	15일 이상 30일 미만	30일
	운 임	운 임	운임	운 임				미만	미만	이상
의 장부의장		·2등급 이 상의 등급 구별이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	1 등 정액		35	166	107	140	170	195
의 원	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 하는 실비액 ·공무상의 사유로 인하 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 요금을 필요	·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 하는 실비액 ·공무상의 사유로 인하 여 침대요금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그 실비액	2 등 정액	실비액	30	145	81	130	155	180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・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.	제1조(목적) <u>제33조</u> <u>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</u>
제6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) ① (생략) ② 월정수당은 <u>월 1,416,000원</u> 으로 한다.	제6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월 2,130,180원</u>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33조 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- 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塡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- 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- 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-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33조 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- 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- 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- 3. 월정수당 :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,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의 안 번 호	제 47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 결 사 항

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제 47 호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 "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"를 "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"로 띄어쓰기 함.
- 나.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 - o「지방자치법」제82조·제83조 \rightarrow 제90조·제91조(안 제1조)
- 다.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
 - 1) oo의 규정에 의하여 → oo에 따라(안 제1조)
 - 3) oo의 규정에 의한 → oo에 따른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제90조, 제91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명 "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"를 "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지방자치법」제90조와 제91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"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과 제2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<u>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</u>	제명 <u>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 직원의 정수(이하 "정원"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「지방자치법」제90조와</u> <u>제91조에 따라</u>
제4조(전문위원) ① ~ ② (생략)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	제4조(전문위원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과 제2항에 따른</u>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90조 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- ②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이 절에서 "사무직원"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91조 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·기능직·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

의 안 번 호	제 48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 결 사 항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제 48 호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제 출 자 : 총무위워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되고,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 (2007. 10. 4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,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 - 1) 「지방자치법」제125조제3항 → 제134조제3항(안 제1조) 「동법시행령」제46조·제47조 →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(안 제1조)
 - 2) 「지방자치법」제56조 → 제64조 (안 제3조)
 - 3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제47조제3항 → 제84조제3항 (안 제9조)
- 나. 정확하고 자연스런 문장의 구성
 - 1) 00조의 규정에 의한 → 00조에 따른

- 2) oo조의 규정에 의한다 → oo조에 따른다
- 3) 00조의 규정에 의하여 → 00조에 따라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「지방자치법」제64조, 제134조
 - 2)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제82조・제83조・제84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 중 "제125조제3항"을 "제134조제3항"으로, "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"을 "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따른"으로 한다.
- 제3조제1항 중 "제2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2조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"를 "제64조에 따른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"을 "별지 서식에 따른"으로 한다.
- 제7조제2항 중 "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2조에 따라"로, "제35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35조에 따른"으로 한다.
- 제9조 중 "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"을 "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84조제3항에 따른"으로 한다.
- 제10조제1항 중 "제4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4조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- 제11조제1항 중 "제10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0조에 따른"으로, "제4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4조제2항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

"제12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2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 <u>제125</u>	제1조(목적) <u>제134조제3항,</u>
조제3항,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	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
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(이하 "위원"	규정에 따른
이라 한다)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	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제2조의 규정에	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제2조에 따른
<u>의한</u> 위원은 거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	
다)가 선임한다.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	③
하되, 그 방법은「지방자치법」 <u>제56조의 규</u>	제64조에 따른다
정에 의한다.	④ <u>별지 서식에</u>
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	따른
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.	
제7조(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 (생략)	제7조(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	② 제2조에 따라
거창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	
결산 검사는「지방공기업법」 <u>제35조의 규</u>	<u>제35조에</u>
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	<u> 따른</u>
갈음한다.	
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「지방자치법시행	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<u>령」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</u> 검사의견	제84조제3항에 따른
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	
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	
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	
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	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	제10조(일비의 지급) ① 제4조에 따른
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일비의 계산)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.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.	<u>제4조제2항에 따른</u>

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 (의결정족수)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34조 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82조 (결산 승인)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제83조 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 (결산 검사 사항)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세입·세출의 결산
- 2. 계속비·명시이월비(明示移越費)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
- 3. 채권 및 채무의 결산
- 4. 재산 및 기금의 결산
- 5. 금고의 결산
-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의 안 번 호	제 49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 결 사 항

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가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제 49 호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제 출 자 : 총무위워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되고,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(2007. 10. 4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 - 1)「지방자치법」제32조의2 → 제34조(안 제1조)
 「동법시행령」제15조의3 → 제35조(안 제1조)
 - 2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제15조 → 제33조 (안 제2조)
- 나. 정확하고 자연스런 문장의 구성
 - 1) oo조의 규정에 의한 → oo조에 따른
 - 2) 00조의 규정에 의하여 → 00조에 따라
 - 3) 각호의 1 → 각 호의 어느 하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34조,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제33조・제3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 중 "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5조에 따라"로 한다.
- 제2조제1호 중 " "직무"라 함은"을 " "직무"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 "의정활동비"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을"을 " "의정활동비"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 "유족"이라 함은"을 " "유족"이란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- 제5조제1항 중 " "장애"라 함은"을 " "장애"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 항 중 " "상해"라 함은"을 " "상해"란"으로 한다.

제9조 중 "각호의 1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3조제1항과 제2항, 제4조제1항, 제6조제1항 및 제10조 본문 중 "각호"를 각각 "각 호"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접 수	제	호		의원	상해	등	보상	상금	청구	P 서		처리기간
보상대성)의원	성	명					주민등 번 <u>호</u>				
		성	巴					주민등 번 <u>호</u>				
청 구	고나	주	소								,	전 화 번 호
0 1	71	청-	구내용	□ 사	망	□ 장	Ċ	PH .		상 해		
		수	상 금 령 당기관				음행 시점		계	좌번호		
상 병 경	앙 소							상	병연월	l일시		
상병원약 발 생 선												
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												
년 월 일 청구인 (날인 또는 서명)												
첨부서류 : 1. 사망의 경우 : 호적등본 1부,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: 상병 경위서 1부,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(대리인 경우) 3.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(사망, 장애, 상해 공통)												
	상기 7	사는 「	지방자치	법」제34조	년	됨을 확인 -군 의회 ⁹	실	Ç	길			
거 🧵	창 군	수	귀 하			- , ,	. 0	` '				

(별지 제2호서식)

접	제	কু	이오	의원 상해 등 보상금		청구 시이견가		처 리 기	간
수				. 641 6	—6 —	01 E	크		
보상대	개상의원	성 명				주민등록 번 호			
l	상 금 ² 내용	□사	망	□ 장	에	□ 상	해		
상해 <i>/</i> 및 <i>-</i>	· 장애· 나실 여부 상태 등 조사 내용								
		〈결 7	성>						
심	의 회	〈결정이수)						
심 으	길과	《심의위 	원 서명〉						
l	창군의회의· 같이 심의			시급에 관한 <i>조</i>	^{돈례} 제13조	제3항의 규	정에 의하여		
				년	월	일			
		거창군의	회의원 성	}해 등 보상심	의회위원장		(인)		
거	창 군	수 귀	하						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(이하	제1조(목적)
"법"이라 한다)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	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
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5조의 3의 규	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5조에 따라
<u>정에 의하여</u> 거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	
다)의원의 직무상 사망, 장애, 상해에 대한	
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	
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의정활동비"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	2. "의정활동비"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
에 의한 의정활동비을 말한다.	<u>활동비를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보상금의 지급대	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
상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	<u>각 호</u>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<u>각호</u> 의 "직무"에 대한 구체적 인	② <u>각 호</u>
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"공무상재해인정	
기준"에 준한다.	
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보상금 지급금액	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
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	각호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	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
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	는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
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	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
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	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
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	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
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	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
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	로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"장애"라 함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제45조에 규정된 "폐질등급"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"상해"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
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 1. ~ 2. (생략) ② (생략)	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<u>각 호</u>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. 1. ~ 4. (생략) ③ (생략)	
제10조(심의회 기능) 심의회는 다음 <u>각호</u> 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4. (생략)	제10조(심의회 기능) <u>각 호</u> 1. ~ 4. (현행과 같음)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34조 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(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33조 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- 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- 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- 3. 월정수당 :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,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34조 (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심의회"라 한다)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·법조계·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·의회의원·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,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없다.

-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,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,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,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 쳐야 한다.
-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
- ⑨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의 안 번 호	제 50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 결 사 항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제 50 호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되고, 같은 법 시행령(2007. 10. 4)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 - 1) 「지방자치법」제38조·제39조·제41조 → 제44조·제45조·제47조(안 제1조) 「동법시행령」제19조의4 → 제54조 (안 제1조)
 - 2)「지방자치법」제118조 → 제127조 , 제125조 → 제134조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제44조, 제45조, 제47조, 제127조, 제134조
- 2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제54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38조·제39조·제41조"를 "제44조·제45조·제47조"로, "제19조 의4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54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"을 "법 제134조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"을 "법 제127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38조·제39조·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.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 (이하 "의회"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(이하 "감사"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 (이하 "조사"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제44조·제45조·제47조</u> <u>제54조에 따라</u>
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 의·의결한다.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 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 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③ (생략)	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44조 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5조 (임시회)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-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임시회의 소집은 시·도에서는 집회일 7일 전에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7조 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7조 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134조 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 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54조 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- 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회의에 부치는 안건
-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의 안 번 호	제 51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결사항

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제 51 호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o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 - 「지방자치법」제34조의3 → 제38조(안 제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제3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34조의3 규정에 의한"을 "제38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 <u>제34조</u>	제1조(목적) <u>제38조에 따른</u>
<u>의 3 규정에 의한</u> 거창군의회(이하"의회"	
라 한다) 의원(이하"의원"이라 한다)이	
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	
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
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38조 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

의 안 번 호	제 52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 결사 항

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번호 제 52 호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제 출 자 : 총무위워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,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 - 1) 「지방자치법」제63조 → 제71조(안 제1조)
 - 2) 「지방자치법」제55조제1항 → 제63조제1항 (안 제14조)
 - 3) 「지방자치법」제71조 → 제79조 (안 제70조)
 - 4) 「지방자치법」제78조 → 제86조 (안 제82조)
- 나.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**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제출**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19조제2항).
- 다. 군정질문의 요지서를 **"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"**하는 것을 변경하여 **"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, 질문시간**

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"하도록 함(안 제66조제4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제63조, 제71조, 제79조, 제8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

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63조"를 "제71조"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"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하 한다) 제55조제1항"을 "「지방자 치법」(이하 "법"이하 한다) 제63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6조제4항 중 "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"를 "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,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70조제1항 중 "제71조"를 "제79조"로 한다.

제82조제1항 중 "제78조"를 "제86조"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	제1조(목적) <u>제71조</u>
등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의회(이하"의	
회"라 한다)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	
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회	
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	
목적으로 한다.	
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	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	②
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<u>지방자치법(이</u>	「지방자치법」(이하"법"이라
<u>하 "법"이라 한다) 제55조제1항</u> 의 정족수	한다) 제63조제1항
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	
있다.	③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
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의회에서 의결할	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<u>①</u>
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	
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재적의원 5분	
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	
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	
(신설)	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
	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
	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
	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66조(군수의 출석요구) ① ~ ③ (생략)	제66조(군수의 출석요구) ① ~ ③ (현행과 같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	음)
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	4
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	
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	
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수하	<u>72시</u>
여야 한다.	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
	야 하며,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
	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 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 ② (생략)	
제82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의장은 법 제 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(이하 "징계 대상자"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 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 ② ~ ⑤ (생략)	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63조 (의사정족수)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한다.

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(散會)를 선포한다.

제71조 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79조 (의원의 자격심사)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있다.

② 피심의원(被審議員)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수 있으나,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.

제86조 (징계의 사유)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.

의 안 번 호	제 53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 결 사 항

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번호 제 53 호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(2007. 10. 4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 "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"을 "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"으로 띄어쓰기 함.
- 나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o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24조 → 제60조(안 제1조)
- 다.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
 - 1) 각호의 1 → 각 호의 어느 하나(안 제4조·제10조)
 - 2) oo의 규정에 의하여 → oo에 따라(안 제1조·제5조)
 - 3) oo의 규정에 의한 → oo에 따른(안 제5조·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60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

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거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"을 "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60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4조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4조제3호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, "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6조제3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10조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16조 중 "제9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9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
제1조(목적) <u>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</u> 60조에 따라
제4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
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이의신청) ① <u>제4조제3호에</u>
<u> 따라</u>
② <u>제1항에 따른</u>
<u>제6조제3항에 따른</u>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 위 원회는 청원이 다음 <u>각호의 1</u> 에 해당할 때 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. 1. ~ 3. (생략)	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징계) 청원을 심사, 의결하는 의원이 <u>제9조의 규정에 의한</u> 제척사유가 있음을	제16조(징계) 제9조에 따른
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<u>지방</u> <u>자치법</u> 및 <u>거창군의회 회의규칙</u>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	「 <u>지방자치</u> 법」 및「 <u>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</u>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60조 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.